한경훈 / 2월+3월 / 도약 GS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29059	21	14	18	12	65	1	5.00%	7	20
529165	20.5	13	16.5	7.5	57.5	2	10.00%	5	
534342	21	14	15	7	57	3	15.00%	7	
534426	20	13.5	14	6	53.5	4	20.00%	5	
534241	21	14	14	4.2	53.2	5	25.00%	6	
529237	19	11	14	7	51	6	30.00%	4	
534222	19.5	13	12	6.5	51	6	30.00%	4	
534355	19	13.5	12	6.5	51	6	30.00%	4	
529277	19.5	13	12.5	5.7	50.7	9	45.00%	5	
534165	20.6	13.5	12.5	3	49.6	10	50.00%	5	
534423	18.6	11.5	13.5	6	49.6	10	50.00%	5	
529402	21	11.5	11.5	5	49	12	60.00%	5	
534187	19.1	13	13	3	48.1	13	65.00%	4	
534391	19	10	12	5.2	46.2	14	70.00%	5	
534188	19.5	6.5	16	4	46	15	75.00%	4	
535363	19.5	7	11	7	44.5	16	80.00%	4	
534807	21	13.5	16,5	8	42.5	17	85.00%	7	
534230	17	4	12.5	2	35.5	18	90.00%	4	
534201	16.5	10	8	0	34.5	19	95.00%	5	
534163	17	11	5.5	0	33.5	20	100.00%	6	

한경훈/2월/도약GS/8회/1번	채점자
	이정은

1. 전반적인 총평

설문1은 답 맞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설문2는 다각적 조치 및 무효심판에서의 조문 판단 중요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대체 규정에 관한 언급 필요합니다.
상품별로 등록요건 판단 시점 판단해야합니다.
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2) 설문 2

예상되는 거절이유 누락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무효심판에서 20호와 21호 판단이 틀리는 분들 계셨는데, 요건 다시 복습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효심판 외의 조치도 줄처리로 많이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3. 소결

같은 흐름으로 같은 답을 적어도 점수가 달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쓴 것처럼 보이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에서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잘 보이도록 라벨링하기, 목차 글씨 이쁘게 쓰기, 결론에서 문제에서 묻는 대로 답 정리해서 쓰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훈/2월/도약GS/8회/2번	채점자
	이정은

1. 전반적인 총평

지리적표시가 있는 표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조문을 잘 찾아서 언급해주면서 답안 작성해야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답안에서 언급된 조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언급하면 됩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문제에서 써주어야하는 조문들이 정해져있어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설문 2

34조1항8호와 12호전단에 관한 판단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등록여부에 관한 답 틀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8호에 관한 판단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3. 소결

답안은 쉽게 보이지만, 문제를 풀면서 답안 쓸 때는 당황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약 지에스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

한경훈/2월/도약GS/8회/3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2개의 설문 모두 조치를 물어봐서 당황하실 수 있으나, 비교적 전형적인 조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33조 1항 3호와 7호에 해당하므로 조치로서 33조 2항을 기재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논점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안 포섭을 잘 했는지, 해당하는 판례를 잘 적어줬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렸습니다.

(2) 설문 2

침해 여부를 먼저 판단하신 후 민사상, 형사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적어주셔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너무 많은 판례를 작성한 답안이 있었는데, 강약 조절이 되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조치를 작성할 때 조문 병기를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많이 출제되므로 이러한 조문들은 암기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소결

이번 문제의 경우 다들 논점을 잘 파악하여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도 점수가 갈린 것은 사안 포섭을 키워드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하셨는지, 필요한 판례를 적절하게 작성하셨는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경훈/2월/도약GS/8회/4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3문에 이어 4문에서도 상표법상 조치 문제를 물어봐서 다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수 조치를 물어보지는 않았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乙의 등록상표에 존재하는 20호, 21호 등의 무효 사유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

문제에 취소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소사유는 아주 짧게만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2) 설문 2

35조 1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상표법상 조치를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조치로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약 당사국에 상표권이 있을 경우,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 논점이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주세요.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신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소결

이번 회차에 4문까지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답안이 많이 보였는데, 시간 관리는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차츰 나아지니 이번에 답안을 끝까지 작성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느덧 8회차의 도약 GS 과정이 끝났습니다.
4주 동안 주말에 나와서 GS 답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문-1>

5-6

I. 설문 (1)

1.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국내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1807조).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한 날로부터 2월 내 정식 그 날을 출원일으로 본다. (의정서 3조 4항)

2. 대처1

(1) 의의. 취지 - 183조

상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출원일을 소급시켜주는 제도이다.

(2) 요건

상표출원일이 (상표권자와) 동일하고, 양 상품가 동일하여, ~~효력~~ 영향장 효력이 국내 등록일 후에 발생해야 한다.

(3) 상품 범위 개정법

의정서 규칙 개정에 따라 지정상품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3. 사안 - 판단시점

(1) 원칙

甲은 ~~2024~~ 2024. 3. 10 국제출원하여 그로부터 2월 내

	인 2024. 4. 10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었으므로 원칙적인
	판단시점은 "2024. 3. 10"이다.
(2)	대체로 인한 유사
	양 상표가 동일하고, 상품류지와 출원인 모두 甲으로서
	동일하고, ~~거절결정~~ 취소 이후 영역확장 효력 발생 전에 甲
	의 상표권 등록된 바 "2022. 3. 1"으로 보인다.
(3)	결론
	'가죽제 지갑'의 경우 대체로 인해 '2022. 3. 1',
	'재킷'의 경우 '2024. 3. 1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Ⅱ.	질문 (2) 15-4
1.	예상거절이유 - 34조 1항 7호
(1)	34조 1항 7호 의의·취지
	~~상표등록~~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 신용 보호 및 수요자 혼동 방
	지을 위해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범위 상표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①甲과 乙의 상표는 외관에 있어 영어 대소문자의 차이
	가 있으나 문자상표에서 가장 주요한 호칭이 '바버'
	와 '바버스'로 유사하고, 관념 또한 유사한 바 양상표
	유사하고, ②가죽재 재킷과 재킷은 용도·형상·거래
	실태 등 유사한 유사상품에 해당하는 바 甲의 출

	원에는 3442 1항 1호 ※거절이유가 있다.
	제3자 관점
2.	2차 ① - 무효심판 청구
(1)	무효심판 의의. 취지 - 1177
	분쟁의 발본적 해결 수단으로서 이해 관계인은 무효사유
	있는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적부
	甲은 乙의 상표등록으로 자신의 출원이 거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정되고 다른 부적법 사유 보이
	지 않아 甲은 심판 청구인 적격 인정된다.
(3)	3442 1항 4호 여부 - 소극
	乙이 甲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사정
	만으로 불혼의 무효사유 결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3442 1항 13호 여부 - 적극
	1) 의의. 취지
	선사용상표 권리자 보호 및 수요자 혼동방지를 위해
	국내 또는 국외 인식도 취득 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
	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상표에 대해 등록
	불가하다.
	2) 부정한 목적 판단 예시
	출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에는 대상 상표의 인식도. 창작성, 양 상표의 구

성, 상품간의 관계, 교섭 유무 및 내용,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업무의 밀접성·유사성, 거래실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안

① 甲의 상표는 ~~2022년~~ 당시 영국 내에서 의류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바 乙의 출원 시에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었고, ② 앞서 살펴본 바 乙 상표와 甲 상표는 서로 호칭이 유사하여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③ 乙은 영국에서 甲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자로서 국내 총판 권리 양수를 위해 교섭했으나 실패한 점, 甲이 국내 시장 진입을 인지하고 출원한 점, 甲의 상표는 조어로서 창작성이 강하고, 영국 내에서 의류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점, 甲과 乙 모두 의류 판매 업자로 그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乙에게 부정한 목적 인정되므로 乙 상표에는 본 무효사유 인정된다.

(5) 34조 1항 20호 - 정극

1) 의의·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반영한 규정으로서,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국내 사용·예정임을 알고 동일·유사 상품을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하면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Z은 영국에서 甲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자로서 甲과의 신의관계 인정되고, Z은 甲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알고 甲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 했으므로 볼 무효사유 인정된다.
(6)	34조 1항 13호 - 정극
	1) 의의. 취지
	파리협약 6조의 1 반영 규정으로서 조약당사국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상품은 신의관계 있는 자나 정당권리자 등의 승인이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甲은 2023.9.1에 영국에서 자신의 상표는 등록받았고, 한국에서도 2022년 말에 상표를 등록받았다. Z은 앞서 살펴본바 甲과의 신의관계 인정되고 甲 상표와 유사 상표는 유사상품에 출원하고 등록받은 바 이에 甲이 동의한 사정도 없으므로 볼 무효사유 인정된다.
(1)	결론
	甲은 Z 상표에 대해 34조 1항 13, 20, 21호의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주장·입증하여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 ③ - 119조 1항 3호 취소심판
	Z의 등록으로부터 아직 3년이 도과하지 않아 취소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다.
4.	공존등의서 제출 - 24조 1항, 7호 단서
	甲은 Z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바 Z의 동의를 얻어 공존등의서 제출을 통해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5.	상품과 양도. 포기 허가
	Z 상품과 무효사유 결재를 이유로 상품과 함께 포기·양도 허락할 수 있다.
6.	심사절차 중지요청 - 70조 1항
	무효심판 청구 후 심결 확정 전까지 심사절차 중지 요청 할 수 있다.
7.	출원 분할
(1)	의의. 취지 - 18조 2항
	개정법에 따라 출원인 편의를 위해 국제상품출원에서도 분할할 수 있다.
(2)	사안

甲은 거절이유 없는 가출원 지양의 빠른 등록을 위해 재귀 불합 후 삭제보정 할 수 있다.

<문-2>

I. 설문 (1)

1. 적절한 출원 유형

본성녹차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바 지리적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2. 출원 절차

(1) 제출 서류 - 362 3항. 5항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시 의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정의 일치 증명 서류 첨부해야 한다.

(2) 사안

甲은 출원시에 '본성녹차'라 '녹차'를 기재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 정의 일치 '증명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3. 등록가능

(1) 정의규정 충족 (22 1항 4호.6호) - 적극

	전남 보성군은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맞물리고 사질양토에 강수량이 많고, 햇빛·그늘이 적당히 만들어지는 곳으로 품질이 우수한 녹차가 생산되는 바, 甲은 녹차 생산 업자와 유통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의 규정 충족한다.
(2)	출원인 적격 - 332 2항
	甲은 지리적 표시인 보성녹차를 사용한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자와 유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출원인 적격 인정된다.
(3)	332 1항 3호. 4호 - 소극
	1) 의의. 취지
	가공식품 포장 및 현재의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는 등록 불가하다. 자타상품 식별력. 독점적 등을 위한 때문이다.
	2) 지리적 표시 예외 - 332 3항
	산지 또는 현재의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품~~포장이라도 지리적 표시인 경우 甲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가능하다.
	3) 사안
	'보성녹차'는 녹차의 산지 또는 현재의 지리적 명칭이나 지리적 표시로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바 본호 해당 없다.
(4)	소결

	甲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등록가능하다.
Ⅱ.	설문 (2)
1.	3조 1항 8호 여부 - 적극
(1)	의의. 취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신용 보호. 수요자 혼동 방지를 위해 타인 표장과 동일·유사 상표 동일 상품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2)	표장 유사 여부 - 적극
	乙 출원상품에서 '트리톤'은 지리적 출처표시기능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트리토' 결합으로 '보성녹차'의 지리적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감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상품의 표장과 甲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3)	소결
	양 표장 유사하고 상품 동일하므로 본호 해당한다.
2.	3조 1항 12호 저명 - 적극
(1)	의의. 취지
	품질보장기능 보호를 위해 품질은인영려 상표 등록불가하다.

(2) 사안

2 상표의 상품은 녹차 이므로 상품을 보고 출원인이 본원에서 생산된 녹차로 혼인하는 등 산지 혼인 염려 있으므로 본 호 해당한다.

3. 34조 1항 10호. 14호 - 6극

(1) 취지. 의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 및 수요자 혼동방지를 위해 주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 상표 출원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불래 그 지역의 정당한 생산 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나 (사용의 경우 부정한 목적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다.~~ 는다.

(3) 사안

2은 전남 보성에서 녹차 생산하는 업자이므로 ~~부정한 목적 인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 본 호 해당 없다.

4. 결론 - 등록불가

34조 1항 12호 리단은 상품보정으로 치유될 수 있으나 34조 1항 8호 제외유 있으므로 등록불가하다.

14

<문-3>

95

Ⅰ. 설문 (1)

1. 심사관 판단 타당함

(1) 332 1항 3호 관련

1) 의의. 취지

기술적 표장의 경우 자타상품 식별력, 독점적응성 없이 등록 불가하다.

2) 기술적 판단 예시

표장의 관념, 상품간의 관계, 거래실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관적으로 판단한다.

3) 사안

甲 상표의 관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빠르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 정도로 인식될 것인바 지정서비스인 대부업과의 관계에서 그 성질이나 특징을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실정상 대부업 등 종사하는 자에게 흔히 쓰일 것으로 보이는 표장으로서 자타상품 식별력 및 독점적응성 없어 볼 때 해당한다.

(2) 332 1항 4호

1) 의의. 취지

보충적 규정으로서 자타상품 식별력 및 독점적응성이 없는 상표 등록 불허한다.

2) 사안

	甲의 상표는 앞서 살펴본바 '그 자리에서 빠르게 바로 해주는 대출'의 의미정도로 수요자에게 직감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甲에게 이 표장을 독점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공익상 부당하므로 을 호 해당한다.
2.	등록 의한 조치
(1)	33조 2항 의의. 취지
	사용주의를 보호 가미한 주장으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시 예외적으로 등록시켜준다.
(2)	엄격해석 원칙 예시적
	을 규정을 들어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한 상표에 대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여하는 규정인 바 을 규정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
(3)	33조 1항 3호 내지 7호 해당
	甲 상표는 앞서 살펴본바 33조 1항 3호 및 7호에 해당한 바 을 묘러 충족한다.
(4)	출원 전 사용
	甲은 출원 전인 2023년 경부터 을 상표를 사용한 바 을 묘럴 충족한다.
(5)	특정인 출처 표시로 인식
	1) 판단기준 예시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사용 기간, 사용 횟수, 계속 사용 여부, 판매 실적, 광고 횟수 및 그 내용, 품질, 여론, 경합관계 사용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실사용 상표 참작 여부에

실사용상표가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사용된 경우 식별력 취득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3) 사안

① 甲의 실사용상표 1, 2는 출원상표에 식별력이 없는 인터넷, 카카가 부가된 상표로서 당업대초 육불이 동일성 인정되고 독립성이 인정되어 분리인식 가능한 상표로서 그 사용을 참작할 수 있다. ② 그 결과 甲은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매년 10만 건 광고하고 2025년 2 대북업계 자산 3위로 평가된 점 등 종합적 고려하면 특정인 출처로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6) 상표·상품 일군

甲은 자신이 사용한 상표와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출원하여 본 요건 충족된다.

(7) 소결

甲은 332 2항 사용에 따른 식별력 취득을 주장.

입증하여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8.5

Ⅱ. 설문 (2)

1. 침해 여부 - 제3조

(1) 혼동가능

제3자가 등록상표와 유사·동일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 (108조1항1호)

사안에서 甲상표 유효 존속하고, 양 서비스 등일 또한 상표유사, 혼동가능성 존재할 것이다.

(2) 상표 유사 - 제3조

1) 일반 유사 판단 매개체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체적·개별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수요자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 혼동 우려 있는지로 판단한다.

2) 요부관찰 필요성 매개체

결합상표에서 일부 구성이 독립하여 출처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전체적 관찰 결론 유도를 위해 요부관찰 필요하다.

3) 요부결정 제3조 기준 매개체

요부 결정시 주된 인상, 인식도, 비중, 상대적 식별력 차이, 결합관계,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 종합

제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사안

① Z 상품에서 '웨컴', '100% 여성전용', '큰' 부분은 단박대출에 비해 상대적인 식별력이 부족하고, 단박대출은 표장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그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甲의 계속적 사용으로 인해 단박대출 부분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점, 단박대출 부분만 두껍은 글씨로 강조하듯 표현되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Z 상표 요부는 '단박대출' 부분이다. ② Z 상표 vs 甲 상표 비교하면 외관에서 글씨체 차이가 존재하나 문자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관념도 '그 자리에서 골바로 해주는 대출'로서 동일한 바 양 상표 유사하다.

(3) 효력제한 - 소극

1) 90조 1항 2호 의의. 취지

식별력 없는 표장 자유 사용 보장을 위해 자기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효력 제한된다.

2) 33조 2항과 관계 ※예외

기술적 표장이 33조 2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 동일한 그 상품을 사용한 권리를 독점하므로 그다

동일·유사 상표로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시 90조 1항 2호에 따라 효력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3) 사안

甲은 33조 2항을 통해 甲 상표 등록받은 바, 乙 상표 B박 복불이 90조 1항 2호 해당된다 해도 효력제한되지 않는다.

(4) 소결

乙 사용은 甲 상표권 침해다.

2. 조치

(1) 민사적 조치

甲은 乙에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 반환 할 수 있다.

(2) 형사상 조치

乙 측의 악의시 침해죄 고소할 수 있다.

(3) 기타

乙에게 경고, 적극적 권리성의 확인심판 청구할 수 있다.

<문-4>

I. 설 (1)

1. 무효심판 청구

(1) 의의. 취지 - 1177조

분쟁 해결의 발본적 수단으로서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

丙은 甲으로부터 상품 Y 수입. 판매하는 자로서 이해관계 인정되고 다른 부적법 사유 보이지 않아 적법하다.

(3) 342 1항 4호 여부 - 소극

乙이 甲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한 사정만으로 불분 해당한다 할 수 없다.

(4) 342 1항 2호 - 적극

1) 의의. 취지

신의칙이 발현된 규정으로서 신의관계 있는자가 지정대리자 상용. 예외 임을 알고 동일. 유사 상품 동일. 유사 상품 촉탁시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乙은 甲과 계약 파기 후 독자적으로 판매하여 신의관계 인정되고 甲의 사용 준비를 모랐다는 사정 보이지 않으며 유사 상표를 유사상품에 촉탁한 바 불분 해당한다.

(5) 34조 1항 2호 - 정곡

1) 의의 - 취지

파리협약 6조의 1 법령 규정으로 고약당사국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동일·유사 상품에 신의관계 있는자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출원시 거절된다.

2) 사안

甲은 고약당사국 일본에 ××상표를 등록받았고 甲과 乙은 신의관계 인정되고 유사상표 유사상품 출원하여 甲 동의 없었으므로 본호 해당한다.

(6) 결론

丙은 34조1항 2호. 1호로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114조 1항 1호 취소심판

국내 인식도 취득 사용 없으므로 불가하다.

3. 114조 1항 3호 취소심판

2출원이 등록 혹 1년 지이므로 불가하다.

4. 피. 양도 제한

무효사유 설명을 근거로 상표권 피. 양도 제한할 수 있다.

Ⅱ.	설문 (2)
1.	예상 거절이유 - 35조 1항
(1)	의의. 취지
	선출원주의 취지 및 수요자 인식 보호 위해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상품 출원시 거절된다.
(2)	사안
	乙 상표 출원 계속 중인 경우 甲과 乙 상표·상품 유사하므로 甲이 동상 출원시 35조 1항 해당한다.
2.	이의신청·정보제공
(1)	의의. 취지 - 60조. 49조
	공중 심사 참여 및 심사 정확성 위해 누구든지 거절이유 있으면 이의신청·정보제공 할 수 있다.
(2)	사안
	34조 1항 20호. 21호 거절이유 있으므로 甲은 乙측 이의신청·정보제공 할 수 있다.
3.	조약우선권주장출원
(1)	의의. 취지 - 46조
	내국인대우 실현 보장 위해 요건 하 파리조약 우선권주장 인정.
(2)	사안

	甲은 2025.2.14 일불 출원했으므로 그로 부터 6월 내 시기적 요건 충족되고 상표.상품이 동일 하며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甲이므로 국내 상표관리인 선임하여 조약의 따른 국지출원시 출원일 ≠ 35조 1항 파당시 파당시점 소급되어 갖는다 선출원이므로 등록가능하다.
4.	공동의서 제출
(1)	의의.취지 - 35조 6항
	거래실제 반영. 불편 해소 위해 유사범위 출원시 공동으로 등록가능하다.
(2)	사안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공동의서 제출하여 등록 받을 수 있다.
5.	포기.취하.양도 제한
	乙 출원 거절이유 있으므로 출원 취하.포기.양도 제한할 수 있다.
	- 이 하 여 백 -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문제 -1]

Ⅰ. 설문(1)

/ 甲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취급

(1) 국제등록상표등록출원의 의의 - 商法180조 1항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출원은 이 법에 따른 출원으로 본다.

(2) 국제상표출원의 출원일 - 商法180조 2항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이 법에 따른 출원일로 본다.

(3) 사안

1) 국제등록일

甲은 2024년 3월 10일 출원상표를 국제출원하였고 이로부터 2개월 내인 2024년 4월 10일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었으므로 2024년 3월 10일이 국제등록일이다. (의정서 3조 4항)

2) 대한민국 출원일

商法180조 2항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일을 2024년 3월 10일로 본다.

2. 대체 인정 여부 - 商法183조

(1) 의의, 취지

인정 요건 하에 국내 등록 상표의 출원일을 국제등록

상표의 출원일로 본다. 상표권 관리의 편의를 위함이다.

(2) 요건

① 상표권자와 국제등록명의인이 같을 것

② 상표는 물리적으로 동일할 것

③ 영역확장의 효력발생일(국제등록일)이 국내등록상표 상표등록일 이후일 것

(3) 사안

① 권리자는 甲으로 동일하고, ② 상표도 "Barbour"로 동일하며 ③ 국제등록일인 2024년 3월 10일 이전인 2022년 말에 상표를 등록받았으므로 '가'국제 지갑에 대해 대체 효과가 인정된다.

3. 결론

① 가국제 지갑은 2022년 3월 1일을 출원일로 보고

② 재킷은 2024년 3월 10일을 출원일로 본다.

15.X

II. 설문(2)

1. 甲 상표의 등록적격성

(1) 구법 34조 1항 7호 의의, 취지

선등록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의 출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

범위 내의 출원은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가죽제 지갑과는 별도로 '재킷'에 대해서는 대체의 도급호가 인정되지 않는 바, 乙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1항 7호에 해당한다.

2. 甲조치 - 가죽제 지갑에 대해서만 등록받으려는 경우

(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법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킷'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34조 1항 7호에 해당하지만 '가죽제 지갑'에 대해서는 거절이유가 없으므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등록 가능하다.

(2) '재킷' 삭제 보정 또는 분할

거절이유 있는 '재킷'에 대해 거절이유통지 이후 삭제 보정을 하거나 (상표법 제85조) 국제사무국에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3. 甲조치 - 모든 상품에 대해 등록받으려는 경우

(1) 무효심판청구 - 상표법 제117조

1) 의의, 취지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익상 하자 있는

상표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法 34조 1항 13호 여부 (적극)

① [의의, 취지] 모방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사용과 및 수요자 보호 위함이다.

② [부정한 목적 판단 判例] i)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ii) 창작성의 정도 iii) 상표의 유사여부 iv) 상품 간 선련관계 v) 당사자 간 오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사안] i) 乙은 甲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자로 甲과 오랜을 라였으나 실패했고, ii) 상표는 'BARBOURS"로 甲의 상표 'Barbours'와 표기·관념이 유사하고 외관도 영어 대소문자 차이에 불과하여 유사하다. iii) 상품은 의류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乙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iv) 따라서 乙은 甲에 국내 시장 신입 저지를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法 34조 1항 13호에 해당한다.

3) 法 34조 1항 20호 여부 (적극)

① [의의, 취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 출원의 등록 불허 규정으로, 일정 신의관계에 있는 자가 유사범위에서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한다.

③[4안] i) 乙은 甲으로부터 이름을 수입한 자로 신의관계가 있고 ii) 甲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iii) 상표는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하므로 구법 34조 1항 20호에 해당한다.

4) 구법 34조 1항 21호 여부 (적극)

①[의의, 취지] 파리협약 준수를 위해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를 일정신의 관계에 있는 자가 유사범위에서 출원한 경우 등록을 불허한다.

②[4안] i) 甲 상표는 2023년 9월 1일 영국에 등록되었고 ii) 乙은 甲과 일정한 신의관계가 있으며 iii) 상표, 상품 모두 유사한 바 구법 34조 1항 21호 해당한다.

5) 소결

甲은 法34조 1항 13호, 20호, 21호를 이유로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존증의서 제출

甲은 乙과의 공존 협상을 통해 공존증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3) 심사절차중지요청 - 法70조 1항

甲 출원의 등록여부결정 시 전 심사중지를 요청하여 乙의 등록상표를 소멸시킴으로써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4) 상표권 효기 및 양도 관계

乙의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甲 자신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것을 취소하거나 포기한 것은 요청할 수 있다.

21

[문제-2] 7

I. 설문(1)

1. 甲 출원의 적절한 유형 – 리리적 표시 단체표장

(1) 의의, 취지 – 상표법 2조 1항 6호

리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또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표장으로서 단체표장권자 및 단체원의 신용 및 수요자 보호 취지이다.

(2) 사안

보성녹차의 품질·명성이 보성군의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말물리고 사질양토에 강수량도 많고 물이 좋은 배지는 특으로 되어 있으며 햇빛과 그늘이 적당히 만들어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특징이 보성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리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2. 甲 출원 절차

① 출원서 (法 36조 1항) 제출,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제출,

③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사유 제출을 요한다.

3. 甲출원 등록가능성

(1) 주체적 요건 심도

甲은 녹차를 생산하는 업자들과 그로부터 녹차를 납품받아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 주체적 요건을 만족한다.

(2) 객체적 요건 검토

甲의 표장 '보성녹차'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 규정 (法 2조 1항 4호)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法 2조 1항 6호) 규정을 모두 만족한다.

(3) 法 33조 1항 3호, 4호 해당여부 (소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해 法 33조 1항 3호 등 소지, 法 33조 1항 4호의 적용이 없는 바 (法 33조 3항) 식별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4) 法 34조 1항 12호 전단 해당여부 (소극)

실무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해 품질오인 염려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보는 바 法 34조 1항 1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상기 서술한 사유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거절이유도 보이지 않는 바 甲 출원은 등록가능하다.

Ⅱ. 설문(2)

1. 法33조 1항 3호, 4호 해당여부 (소극)

"오리온"과 "보성녹차"의 결합으로 전체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法33조 1항 3호,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法34조 1항 12호 전단 해당여부 (적극)

乙은 "오리온 보성녹차"라는 표장을 "녹차"에 대해 출원하였는데 이는 "녹차(보성군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이라고 한정보정하지 않으면 法34조 1항 12호 전단에 해당할 수 있다.

3. 法34조 1항 8호 해당여부 (적극)

乙 출원상표에서 "오리온"은 지리적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보성녹차"가 지리적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甲의 단체표장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동일하여 수요자에게 출처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바 유사하여 法34조 1항 8호에

해당한다.

4. 法 34조 1항 10호 해당여부 (적극)

① 보성녹차는 그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② 포장은 서로 동일하고 ③ 상품도 동일하므로 法 34조 1항 10호 해당한다.

5. 法 34조 1항 14호 해당여부 (적극)

① 보성녹차는 지리적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② 포장은 동일하며 ③ 乙은 전남 보성군에서 녹차를 생산하는 업자이므로 甲의 단체표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甲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보성한 녹차 인정되어 法 34조 1항 14호에 해당한다.

6. 결론 - 등록 불가

乙은 法 34조 1항 8호, 10호, 12호 전단, 14호 해당하는 출원을 하였으므로 등록 불가하다.

7

IE

[문제-3] 9.5

I. 쟁점(1)

1. 상표법 33조 1항 3호 해당여부

(1) 의의, 취지

자타상품식별력이 없고 독립적 사용성이 없는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기 위해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불가하다.

(2) 기술성의 판단기준 判例의

상표가 지닌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사안

① 甲의 상표 '단박대출'은 '빠른 대출'이라는 관념을 지니고 ② '대부업'과의 관계에서 '빠르게 대출해주는 서비스'임을 직감할 수 있는 바,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고 ③ 거래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시로서 독립적 사용성도 없으므로 ⇒ 상표법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

2. 상표법 33조 1항 4호 해당여부

(1) 의의, 취지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자타상품식별력과 독립적응성 없는 상표의 등록을 불허한다.

(2) 사안

甲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1항 3호의 기술적 표장에도 해당하고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여 식별력과 독립적응성 모두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1항 7호에 해당한다.

3. 甲 조리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

(1) 상표법 제33조 2항 의의, 취지

상표 사용자 및 수요자 보호 위해 출원 전부터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특정 출처로 식별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2) 엄격 해석의 원칙 判例

상표법 제33조 2항은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해 대세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3) 출원 전부터 사용여부 (적극)

甲은 출원일인 2025년 4월 6일 이전 2019년 6월 회사 설립과 동시에 '甲 상표'를 사용해왔으므로 문제없다.

(4) 상표법 제33조 1항 7호도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개정법상 3조 33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5) '甲'의 출처로 식별되었는지 여부 (적극)

1) 판단기준 判例

상표의 사용기간, 횟수, 광고 선전의 비용·기간, 경합적 사용의 정도, 상품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신사용상표의 확각법의 判例

출원상표가 독립성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분리인식될 수 있다면 신사용상표의 사용실적은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3) 사안

① 신사용상표 1, 2 내에서 '인터넷', '전화'는 '대부업'에서 흔히 쓰이는 표지에 불과하여 ② 출원상표 '단박대출'이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분리인식될 수 있는 바 사용실적 확각가능하고 ③ 甲은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신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매년 10만건의 광고를 하여 광고비로 500억원 가량을 지출한 점, 2025년 초에 이르러 대부업계에서 3위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甲'의 출원로 식별되었다고 보여진다.

(6) 사용상표는 사용상품에 대해 출원 이부(적극)

甲은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였고, '대부업'과 '직접 대출방식'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문제없다.

(7) 소결

甲은 法 33조 1항 3호, 7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취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4. 결론

① 심사관의 판단은 타당하나, ② 甲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입증함으로써 등록 가능하다.

Ⅱ. 설문(2) 5.5

/ 경업정리

乙은 정당권원 없이 甲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침해에 해당하는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i) 유사판단 및 ii) 특별제한사유 판단시 제한이 없는지 살핀다. /

2. 상표 유사여부 (적극)

(1) 등록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判例

등록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사용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부로 볼 수 있다.

(2) 사안

甲과 乙은 모두 '대부업'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품 범위 동일하다. 따라서 각 상표에서 상대적 식별력이 높은 부분은 '단박대출'로서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 바 출처혼동을 일으키는 유사상표이다.

3. 효력제한사유 존부 (소극)

(1) 判例

등록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므로 法 90조에 의해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2) 사안

甲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이 사용하는 상표는 法 90조에 의해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4. 甲의 조치

(1) 민사상 조치

甲은 乙에게 ① 침해금지청구, ② 손해배상청구 ③ 신용회복청구 ④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2) 형사상 조치

乙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침해죄(3法230조)로 고소할 수 있고, 乙이 법인이라면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몰수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기타 조치

乙에게 침해금지가처분, 가압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의 조치를 취해볼 수 있다.

[문제-4]

3.5

I. 설문(1)

/. 甲 조치 ④ - 무효심판 청구 (적극)

(1) 의의, 취지 - 3法117조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익상 하자있는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3法34조 1항 13호 여부 (소극)

乙은 甲의 X와 유사한 상표 X'를 유사한 상품 Y'에 출원하였고, 甲이 한국에 출원하지 않음을 알고 출원한 것으로서 부정한 목적 있음, 인식도 취득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구법 34조 1항 1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구법 34조 1항 20호 여부 (적극)

① 甲과 乙은 판매계약을 통해 일정한 신의관계에 있고 ② 乙은 甲이 국내에서 사용할 것을 알면서 ③ X와 유사한 X′ 상표를 ④ Y와 유사한 Y′ 상품에 출원하였으므로 구법 34조 1항 20호에 해당한다.

(4) 구법 34조 1항 21호 여부 (적극)

① 甲과 乙은 일정 신의관계 인정되고 ② 조약당사국 일본에 등록된 甲 상표 X와 유사한 X′ 상표를 Y와 유사한 Y′에 출원하였으므로 구법 34조 1항 21호에 해당한다.

(5) 소결

따라서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구법 34조 1항 20호 및 21호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소멸을 기대할 수 있다.

2. 甲 조치② – 취소심판 청구 (적극)

乙은 등록상표 X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X′을 지정상품 Y와 사회통념상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Y′에 사용했으나, 3년 기간도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취소심판 청구는 본가하다.

3. 丙 3의③ - 조기 및 양수

乙의 등록상표에 무효사유 있음을 이유로 乙에게 조기나 양수를 권유해볼 수도 있다.

Ⅱ. 선출(2) 3.5

1. 甲 3의④ - 정보제공, 이의신청(法 49조, 60조)

甲은 乙의 등록상표에 法 34조 1항 20호, 21호의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2. 甲 3의③ - 공존동의서 제출

甲은 乙과의 공존 협상을 통해 공존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3. 甲 3의③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1) 의의, 취지 - 法 46조

내국민대우 실효성 보장 위해, 조약당사국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상표를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 인정되어 출원일이 소급한다.

(2) A안

甲의 예상거절이유는 法 35조의 선출원주의 위반인 바, 재외자 甲은 상표관리인 선임(3조 6호)을 통해 일본의 출원인은 2025년 2월

14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에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을 함으로써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4. 甲고치④-실시전차승치요청-제70조1항

乙의 출원이 등록되기 전 실시전차승치요청을 통해 乙의 등록을 저지하고 甲자신의 출원의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